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2. 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16년 12월 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가. 개정이유

- 동(同) 조례안은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삭제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음식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설치·이용 조항 신설(제2조, 제10조)
- 다량배출지역에 대한 별도의 시책 추진 조항 신설(제8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용기 지원 조항 신설(제12조)
- 각호 서식명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한 자에 대한 개선 기한 삭제(제18조)
-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규 변경(제19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2016. 10. 20. ~ 11. 9.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정의내용 및 RFID 카드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홍대주변 등 다량배출지역에 대한 특화구역 지정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제 도입에 따른 물품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각호 서식명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자에 대한 개선 기한을 환경부의 개정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과태료 부과 근거 법규를 「지방세기본법」에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관련 서식의 명칭을 수정하고 붙여 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법규명을 띄어쓰기 등 조례내용을 정비하였고, 또한 동(同)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는 홍대주변 특화구역 지정, 음식쓰레기 배출 시 RFID 카드 사용 및 문전수거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개정되었음
- 다만 폐기물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홍대주변 등 다량배출지역에 대한 특화구역 지정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 설치에 따른 RFID 카드 사용 의무화하면서 음식물류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종전에 과태료 부과 후 이행사항에 대한 개선기간을 2개월 주었으나, 상위법에 없는 내용으로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 폐지 요청이 있어 이번에 우리 구 조례에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조례 시행 전에 동주민센터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를 통한 홍보와 "내고장 마포"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류 배출 위반자 과

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